

보도 시점 2026. 6. 18.(목) 12:00 배포 2025. 6. 18.(목) 11:00

창업에만 집중하세요... 국세청, 「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」로 청년 사장님을 지원합니다.

- 임광현 국세청장, 6.18.(목)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
-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「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」 서비스 발표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6.18.(목)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.
 - 지난해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자와의 소통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창업 현장행보로서, ‘국가창업시대’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.
 - 특히, 음식업은 IT,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, 최근에는 AI, 로봇, 바이오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.
 -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음식·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·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.
 -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·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「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」 정책을 발표했다.
-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대표들은 자신이 직접 체감한 도전과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,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생생한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. **붙임 1**
 - 임광현 국세청장은 “푸드테크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,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,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K-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.”라면서,
 - “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.”고 밝혔다.

- 강정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은 “국세청의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은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분야 등에서 창업을 꿈꾸며 글로벌 무대로 향해 달리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.”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.
- 청년대표로 참석한 (주)노마드클라운 윤현홍 대표는 “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세무지식 및 경험 부족, 행정업무 부담 등 사업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,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.
-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「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」를 추진한다. **붙임 2**
 -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감면 최소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을 통해 공제 감면 적정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한다.
 - 전국 17개소 「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」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세금교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.
 -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·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일정 등을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한다.

"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" 란?

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

▶ 신규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

지원대상

▶ 15세이상34세이하인청년으로창업하고2년이경과하기전까지사업자서비스별지원대상은붙임2참조

1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

2 세무 컨설팅 제공

3 세무정보 자료 제공

- 공제 감면 적정 여부 신속 검토
- 사전 수정신고 안내
- 신고 오류 관련 가산세 최소화

-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
- 세금 안심 교실 운영
- 교육 이수 기업에 각종 혜택 부여

- QR코드 포함된 시각 자료 제공
-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 제공
- 납세자세법교실 일정 안내

- 또한,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·폐업·재기의 모든 사업 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·시행하고 있다.
 - 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, 감면 대상자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.

-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,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.

구분	기본감면		
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	
		수도권 內	수도권 外
창업중소기업	-	5년 25%	5년 50%
청년창업·생계형	5년 50%	5년 75%	5년 100%

※ 감면율은 '26.1.1. 이후 창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

- '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단계에서 「절세혜택」 안내를 제공한다.
 - 청년창업사관학교,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별 창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,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, 현장상담실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.
 - 또한, 청년 창업자가 국세청 누리집 「청년세금」 코너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을 제공한다.
- ②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-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, 부가세 조기환급,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.
 -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.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정착 및 납세협력 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하고, 인지도가 낮은 신규 사업자의 홍보지원을 위한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하였다.
 -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·퇴직자·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문을 제공한다.
- ③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.
-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 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확대·운영한다.
 - *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【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】
 -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.
 - *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【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】

- ④ ‘창업 중심 시대’로의 전환에 발맞춰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.
- 지난해 12월부터 「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」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폭넓은 우대 혜택을 제공 중이다.
 - **올해 1월**부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「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*」의 세무조사 유예(최대 2년간)를 신설하였고,
 - * '26.5.11. 기준으로 12,333개의 「착한가격업소」가 지정되어 있으며, 이 중에 청년사업자의 주요 업종인 음식업, 미용업이 착한가격업소의 93%를 차지
 - 일정한 요건을 갖춘 「수출 중소기업」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2년간 확대(1년 → 2년)하고, 「스타트업 기업」의 경우 정기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확대(사업개시일 5년 → 10년)하여 시행하였다.
 - 또한, **올해 4월**부터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시기(3개월 범위 내)를 선택할 수 있는 「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」를 전면 시행하였다.

1 세정지원 및 안내 강화

- 1 (신설) 청년 창업자를 위한 「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」 서비스 제공('26.6월~)
- 2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적용대상자 안내 제공
- 3 (신설) 청년 창업자에게 유리한 소득세 공제·감면에 대한 「절세혜택」 제공('26.5월~)
- 4 지역별 창업지원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금교육 등 공감소통 활성화
- 5 (확대) 각종 지원서비스 연계 기능 제공 등 국세청 누리집 「청년세금」 코너 개선('26.6월~)

2 청년 창업 정착 지원

- 1 중소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납기연장, 부가세 조기환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 시행
- 2 청년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소규모 주류제조장 시설 기준 완화 및 (확대)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 확대('26.1월~), (확대) 시음주 제공 한도 확대('26.1월~)
- 3 (확대) 퇴직자·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학자금 상환유예 선제적 안내

3 청년 창업 재기 지원

- 1 (확대)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 면제 및 맞춤형 안내 실시('26.1월~)
- 2 (신설)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로 경제활동 복귀 지원('26.1월~)

4 정기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

- 1 「일자리 창출 청년 기업」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(최대 2년간) 확대('25.12월~)
- 2 (신설) 「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」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설('26.1.28.~)
- 3 (확대) 「수출 중소기업」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연장·확대('26.1.28.~)
- 4 (확대) 「스타트업 기업」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(사업개시일 5년→10년) 확대('26.1.28.~)
- 5 (신설) 「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」 전면 시행('26.4월~)

□ 창업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외로운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에, 앞으로도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조정관 국세데이터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김선주 (044-204-2361)
		담당자	사무관	김미나 (044-204-2362)
<협조>	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	책임자	과 장	신예진 (044-204-2701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영 (044-204-2717)
		담당자	사무관	홍문선 (044-204-2722)
<협조>	징세법무국 징세과	책임자	과 장	안민규 (044-204-3001)
		담당자	사무관	신지명 (044-204-3012)
<협조>	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유지민 (044-204-3041)
		담당자	사무관	정영순 (044-204-3052)
<협조>	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	책임자	과 장	이인섭 (044-204-3201)
		담당자	서기관	최홍신 (044-204-3212)
<협조>	개인납세국 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	손채령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강 (044-204-3252)
		담당자	사무관	윤나영 (044-204-3262)
<협조>	개인납세국 세정홍보과	책임자	과 장	권오흥 (044-204-3281)
		담당자	사무관	이일생 (044-000-3292)
<협조>	법인납세국 법인세과	책임자	과 장	신재봉 (044-204-33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동 (044-204-3322)
<협조>	법인납세국 원천세과	책임자	과 장	김태수 (044-204-3341)
		담당자	사무관	백인수 (044-204-3352)
<협조>	법인납세국 소비세과	책임자	과 장	정희진 (044-204-3371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영 (044-204-3374)
<협조>	조사국 조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준 (044-204-3501)
		담당자	사무관	박승규 (044-204-3512)
		담당자	사무관	정성한 (044-204-3517)
<협조>	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	책임자	과 장	정상수 (044-204-3801)
		담당자	사무관	선희숙 (044-204-3817)
<협조>	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	책임자	과 장	정상수 (044-204-3801)
		담당자	사무관	선희숙 (044-204-3817)
<협조>	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	책임자	과 장	강민성 (064-731-3210)
		담당자	사무관	고택수 (064-731-3211)

□ 간담회 개요

○ (일시) '26. 6. 18.(목) 9:30 ~ 10:30(60분)

○ (장소) 서울먹거리창업센터*(서울 강동구 소재)

* 국제도시 서울이 보유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소비시장,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·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(현재 75개 기업 입주)

○ (참석대상) 국세청장, 기획조정관, 각 실무 국·과장, 강동서장

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, 6개 입주기업 대표

○ (간담회 내용) ① 창업 청년이 궁금해하는 세금 및 세제지원 제도 안내,
② 청년 창업통계, ③ 창업 청년 애로·건의사항

□ 간담회 사진

□ 청년 대표업체

참석업체	대표이사	기업소개
(주)노마드크라운	윤현홍 외	무설탕, 저칼로리 천연 자일리톨 캔디 생산 및 판매
그 레이 웨 일	정 영 준	여성을 위한 저자극 이너케어 브랜드 '톡투허' 운영
조니스그로서리	정 다 슝	무설탕 고식이섬유 그레놀라 전문 브랜드 '조니스그로서리' 운영
포 부	고 형 선	피크타임 대응형 초고속 다품종·음료 자동 제조 시스템
빈 스 먼 스	이 해 민	카페 맞춤형 원두를 5% 단위로 정밀 배합하는 데이터 기반 커스텀 블렌딩 서비스 제공
농업회사법인 (주)백경증류소	정 창 윤	프리미엄 전통주 및 건강차 제조 판매

□ 주요 건의·질의사항

- 장기 성장형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유인을 위해 인증제도 시행 건의
- 성실납세를 위한 사업자등록 초기 단계에서 기초교육 등 시행
-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시점은
-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이 무엇인지
- 창업 후 3년 미만 신생 기업에 한정하여 단순 행정오류에 대한 가산세 감면 또는 면제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
- 일정 요건의 청년 사업가를 전담하는 '청년 전용 세무사'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
- 청년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감면받는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지
- 동결건조된 주류파우더를 혼합하여 주류를 제조한 후, 이를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
- 경미한 설비 변경의 경우 용기 검정 및 측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
- 복잡한 전통주의 주세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택스 화면 마련 및 모두 채움 방식 또는 간편확인 신고 방식의 도입이 가능한지
- 전통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통주 명칭 및 분류 체계를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지

□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쏭달쏭 적격증빙 관련 FAQ

1.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?

- ✓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 결제의 경우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,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.

2.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- ✓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,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✓ 다만,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주말에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경비 인정되나요?

- ✓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용 요일은 관련이 없습니다. 다만, 주말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적사용으로 오해를 받아 경비가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명확하게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.

4.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?

- ✓ 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경조사 사실과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.
- ✓ 또한,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의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.

5. 사업자번호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 지급 시 증빙 수취 방법은?

- ✓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서, 금융증빙 등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작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정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✓ 다만, 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·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6. 3만 원 이하로 물품구매시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?

- ✓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((세금)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)을 수취하여야 하나, 3만 원 이하의 소액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에 대한 수취의무는 면제됩니다.
- ✓ 다만,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,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.

□ **추진 개요**

-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**맞춤형 세금 및 교육 정보** 등을 안내하는 「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」 서비스* 추진
 - * 신규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시스템

□ **지원 대상**

-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**창업**하고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업자

□ **지원 내용**

- **(소득세 신고 안심체크)** 각종 공제 감면 규정은 요건이 복잡하여 신고 청년 창업자*가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,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**적정 여부**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**선제적으로 수정신고 안내**
 - *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, 전문직 업종 제외,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(예시 농·임·어업 등은 3억 미만, 제조업 등은 1.5억 미만 등)
 -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각종 증빙, 해명안내 등이 필요한 수입금액, 필요 경비는 신속검토가 어렵지만, **공제·감면 적정여부** 위주로 검토·안내하여 **가산세 부담 최소화**
- **(세무컨설팅 제공)** 전국 17개소 「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」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**세금교실** 및 **현장상담실** 등을 운영하고 **세금교실**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**혜택*** 부여
 - * 창업기업이 어려워 하는 공제·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
- **(세무정보 자료 제공)**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**QR코드**가 포함된 **시각화된 자료** 제공
 - 부가세 등 **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**와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**기초세법, 실무교육 등 온·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* 일정**** 제공

* ('26년) 온라인 32개 과정, 54회/ 오프라인 13개 과정, 25회, 2,420명 참여 가능

** (일정확인 및 신청) 납세자세법교실 > 알림소식 > 강의일정

(콘텐츠 확인) 유튜브 > 국세공무원교육원, 주요 키워드로 검색

- 최초 사업자등록 후 1~2년 미만 신규사업자에게 안내가 없어 놓치지 쉬운 **원천세(ex 원천세 반기별납부신고자) 등 신고일정 문자 발송**

□ 향후 계획

- 세법교육 일정 안내 및 원천세 신고안내 알림을 **시범적**으로 추진하고, 인력·예산 및 향후 필요에 따라 안내 정보와 대상자를 **점진적**으로 확대 추진

총괄 부서	기획조정관 국세데이터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김선주 (044-204-2361)
		담당자	사무관 김미나 (044-204-2362)
담당 부서	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	책임자	과 장 강민성 (064-731-3210)
		담당자	사무관 고택수 (064-731-3211)
	개인납세국 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 손채령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 김주강 (044-204-3252)
	법인납세국 법인세과	책임자	과 장 신재봉 (044-204-3301)
		담당자	사무관 김선영 (044-204-3302)
	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	책임자	과 장 신예진 (044-204-2701)
		담당자	사무관 이종영 (044-204-2717)
		담당자	사무관 홍문선 (044-204-2722)
	법인납세국 원천세과	책임자	과 장 김태수 (044-204-3341)
		담당자	사무관 백인수 (044-204-3352)